

## 공청회 통보

물 상품 (water commodity) 배달 요금 조정 건

2009년 8월 25일 오후 6:30

지역 회관(Community Meeting Center)

11300 Stanford Avenue, Garden Grove

**William J. Dalton**  
Mayor

**Steven R. Jones**  
Mayor Pro Tem

**Dina Nguyen**  
Council Member

**Bruce A. Broadwater**  
Council Member

**Andrew Do**  
Council Member

본 통지서는 가든 그로브 시 의회가 2009년 8월 25일 오후 6:30에 가든 그로브 지역 회관(Garden Grove Community Meeting Center - 11300 Stanford Avenue, Garden Grove, California)에서 공청회를 여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토목 공사 수도 서비스국에 적용되는 물 상품 배달 요금에 대해 제안된 조정 금액에 대하여 논의될 것이며, 본 요금 조정은 도시 수도국(MET)이나 오렌지 카운티 수도국(OCWD) 등 기관으로부터 물 조달에 있어 예기치 못한 인상분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시에서 거주 보건국(DPH) 및 미국 환경 보호청이 부과하는 법적 의무와 서비스 의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 요금 조정 제안 이유

가든 그로브 시가 제공하는 수도의 대부분은 오렌지 카운티 수도국(OCWD)이 관리하는 지하수 탱크에서 수도 펌프로 끌어올리는 물과 지역 수도 도매 판매 기관인 MWDOC를 통해 MET로부터 도매로 구입하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시에서는 OCWD와 MET/MWDOC에 지불되는 물값에 아무런 통제권이 없습니다. 시가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드는 전체 비용의 40%는 물 상품 구입에 소요됩니다.

2007년 시에서는 건축, 재료, 공급품, 연료, 인건비 등의 인상분을 채우기 위해 수도료를 인상하였습니다. 2007년 요율 인상은 2011/201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입니다. 2007년에 정해진 요율은 시가 작성한 수도 재정 계획(“계획”)에 근거한 것으로, 본 계획에는 10년 기간에 걸친 수도 서비스국의 운영, 자본 지출, 채무액 지불 등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추산된 기금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 계획에 나타난 추산된 향후 물 상품 비용은 MET/MWDOC, OCWD가 당시에 제공한 추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ET는 물 공급 부족 및 새크라멘토 델타 및 여타 시설에서 사용하는 수도량에 법적으로 제한이 가해진 이유로 MET측에서 사전에 시에 알려온 것보다 상당히 많이 금액을 올리게 될 것임을 최근 알려왔습니다. MET에 따르면 2009년 9월 1일을 시작으로 시에 부과하는 물 요금이 향후 15개월 동안 40% 이상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OCWD에서는 2010, 2011년에 요금을 각각 8%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에 알려왔습니다.

2009년 9월 1일부로 유효한 MET의 요율 인상으로 인해 MET/MWDOC로부터의 물 구입 비용이 예기치 못하게 인상되었으므로 비용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MET/MWDOC와 OCWD가 앞으로 부과할 예기치 못했던 큰 폭의 요율 인상분을 채우기 위해 탄력적인 요율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시가 시 수도 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영하며, 채권 지불금을 갚고 주 정부, 연방 정부 기관 법규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채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부분에 배정된 자금이 MET/MWDOC와 OCWD가 인상한 물 요금을 지불하는 데 대신 쓰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조정 제의 요금

미터기 서비스에 대한 시 수도 요율은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 고객의 미터기 크기에 따른 기본 서비스 요금 (2) 고객 미터기 크기에 따른 자본 지출 요금 (3) 고객 사용 수도량에 따른 상품 배달 요금 (4) 고객 사용 수도량에 따른 상품 조정 요금

본 제안서는 지역 도매 기관 MWDOC를 통해 MET로부터 가든 그로브 시가 구입하는 물의 예상치보다 많아진 비용 인상을 채우기 위해 현재의 요율의 상품 요금 부분에서 청구 유닛 당 \$0.19의 인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 물값 도표에서 상품 조정 요금 부분이 물 100 평방 피트(“HCF”) 당 (748 갤런) \$0.27이었던 것에서 \$0.46으로 오르게 됩니다. 본 제안서에 의하면 다른 요금 부분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본 제안서에 의하면 평균 주민 고객의 수도 요금이 매월 약 \$2.85 (5/8 x 3/4-인치 크기의 미터기와 15 HCF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또는 매 2개월마다 \$5.70 인상되게 됩니다. 귀하의 수도 요금은 귀하의 물 사용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제안서가 승인되면 인상된 상품 조정 요금은 2009년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한 번만의 인상에 추가하여, 시 의회는 시 관리자에게 향후 5년 동안 상품 조정 요금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의 채택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공공 기관이 예기치 못하게 부과하는 요금 인상 또는 인하 부분이 있으면 가든 그로브 시가 수도 구매를 위해 이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요금 조정 근거

상품 조정 요금의 \$0.19 인상 제안은 시가 물을 구매하기 위해 2009년 9월 1일부터 MET/MWDOC에 내기 시작하는, 예상치 못했던 실제 인상 비용에 직접 기준하여 계산된 것입니다. 시의 현재 또는 추정된 상품 비용과 제안된 상품 통과 요금 인상 계산 기준에 대한 자료는 시 서기 사무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된 조례는 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기치 못한 비용 인상 또는 인하를 채우기 위해 상품 조정 요금을 향후 자동적으로 조정할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정부 법53756 조에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동적인 조정은 여타의 공공 기관 (즉 MET/MWDOC 또는 OCWD)이 시에 부과하는 금액에 예기치 못한 인상 또는 인하의 결과로 인해 시가 그러한 기관으로부터 물을 구매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차액에 직접 근거하여 계산될 것입니다. 자동 조정은 당시 유효한 요금 표에 이미 반영되지 않은 인상 또는 인하분에 한해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자동 조정이 일어나기 전 최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할 것입니다. 또한 물 상품 비용의 예기치 못한 인상 또는 인하분에 대한 기록과 모든 조정분 계산 근거는 모든 자동 조정이 일어나는 때에 주민들이 요청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마련될 것입니다.

### Proposition 218 주민발의안 218

주민발의안 218이 정의하는 주택 소유주는 공청회 이전 또는 중간에 제안된 요금에 대하여 서면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민발의안 218과 정부 법53755조에 준하여, 본 통지서는 해당 주택의 등기 소유주들에게 가장 최근 작성된 형평 평가대(equalized assessment roll)에 나타난 주소로, 또 해당 구획에 위치한 모든 수도 서비스 수령 소비자들에게 시에서 통상적으로 청구서를 보내는 주소로 발송되었습니다. 귀하가 주민발의안 218이 정의하는 주택 소유주이고 본 통지서에 설명된 제안된 요금에 반대하신다면 정해진 공청회 시에 또는 그 이전까지 시에 서면 이의 제기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이의는 아래의 주소로 발송하시거나 시 서기에게 직접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b>우편 전달:</b>	<b>City of Garden Grove</b> P.O. Box 3070 Garden Grove, California 92842	<b>직접 전달:</b>	<b>City of Garden Grove</b> 11222 Acacia Parkway Garden Grove, California 92840
---------------	--	---------------	---

항의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주택의 단일 또는 복수의 등기 소유주 이름
2. 평가자 구획 번호나 주소에 의한 주택 명칭
3. 항의 진술 (“본인/본인들은 ...에 대하여 항의한다.” 면 충분합니다)
4. 항의하는 단일 또는 복수의 소유주 서명 원본 (사본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소유주 숫자에 관계 없이 주택 소유주 각인이 단일 투표자로 계수될 것입니다. 등기 소유주가 둘이라면 둘 다 항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소유주가 세 명 이상이라면 항의서는 과반수의 소유주가 서명해야 합니다. 하나의 주택에 대한 여러 장의 항의서는 허락되지 않을 것이며 시 서기는 한 주택 당 하나의 항의서만 접수할 것입니다.

본 통지서나 제안된 요금 조정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714) 741-5520로 시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